

부 천 소 사 (2)지 구 택 지 개 발 사 업

---

# 지 구 단 위 계 획 결 정 서

2006. 12.

경 기 도

## 목 차

### I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-----	3
2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사유-----	3
3. 해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도면 및 위치도 : 붙임--	3

### II. 지구단위계획 결정서

1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-----	6
가.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-----	6
2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-----	17
가. 일반계획-----	17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-----	18
3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-----	25
4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-----	29
5.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(변경)-----	31

### II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( $S = 1 : 2,500$ )	
2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( $S = 1 : 2,500$ )	
3.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(변경)도( $S = 1 : 2,500$ )	
4.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도( $S = 1 : 2,500$ )	

부 천 소 사 (2) 지 구  
택 지 개 발 지 구 단 위 계 획

## I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2.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신청사유
3. 해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도면  
및 위치도 : 붙임

# I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

## 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구 역 명	부천소사(2)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
위 치	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, 괴안동, 범박동 일원
면 적	219,257.3m <sup>2</sup>

## 2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사유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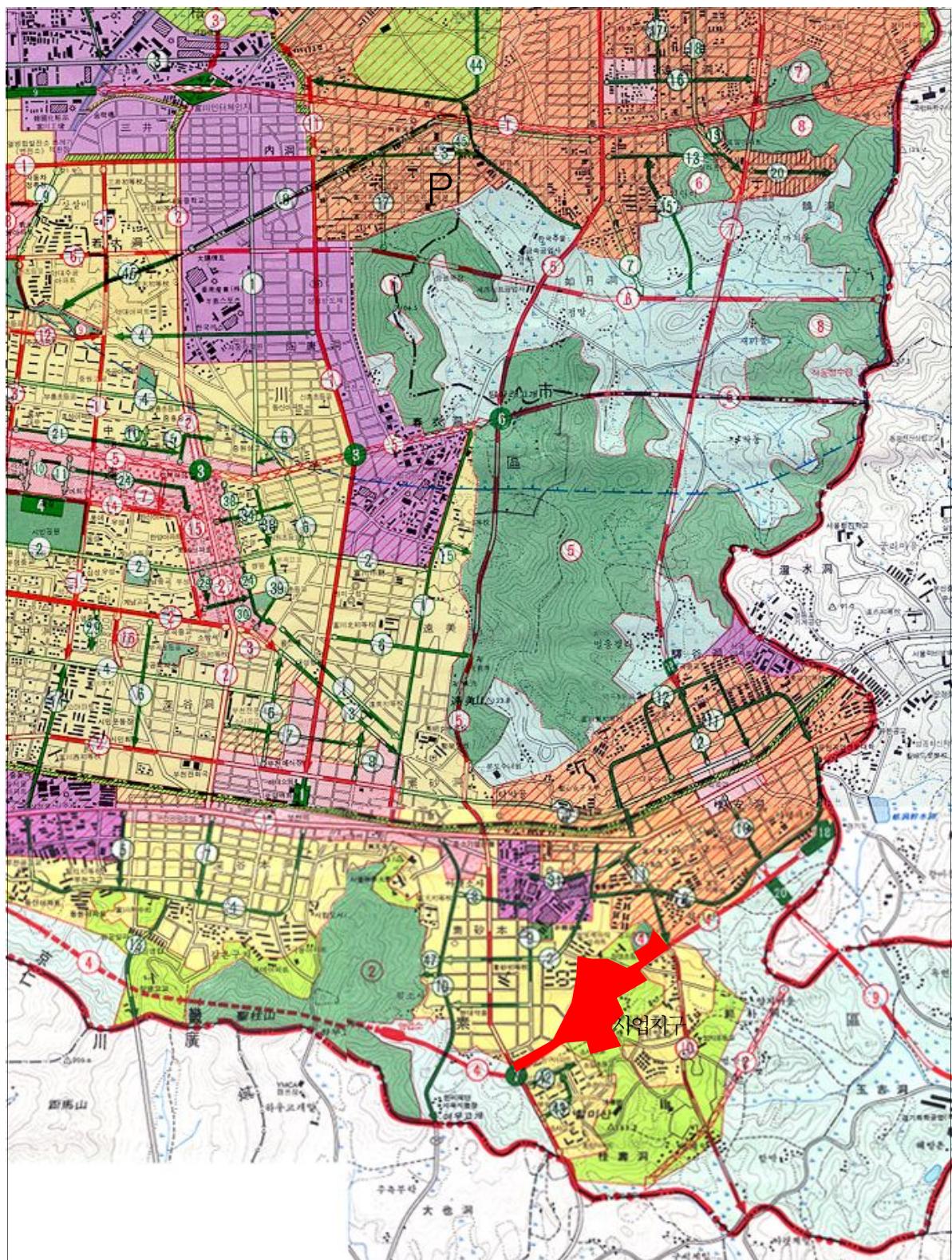
- 부천시 남부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구내 노후불량주택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장의 정비로 자족기능과 함께 모범적인 주거단지 개발을 통한 소사생활권의 주거 기능 담당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으로 쾌적하고,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의 필요성 대두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1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) 제 1항 제 5호, 택지개발촉진법 제 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,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,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신청함

## 3. 지구단위계획 변경 연혁 반영

- 2015.7.27. : 부천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(부천시 고시 제2015-126호)
  - 공공청사(폐지), 청소년수련시설(신설)
- 2016.1.5. : 소사~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098호)
  - 철도(복사정거장) 일부 편입(145.1m<sup>2</sup>)

## 4. 해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도면 및 위치도 : 붙임

# 위 치 도



부 천 소 사 (2) 지 구  
택 지 개 발 지 구 단 위 계획

## II. 지구단위계획 결정서

1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 
결정(변경)
2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 
결정(변경)
3. 건축물에 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  
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 
결정(변경)
4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
5. 특별설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(변경)

## II. 지구단위계획 결정서

### 1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

#### 가.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

##### 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###### ●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(소2) 대로	3	1	25 ~ 31	보조 간선	1,254	대로3-10	소사본동 369잡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대로	3	1	25 ~ 31	보조 간선	1,251.5	대로3-10	소사본동 369잡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중로	1	1	20	집분산	170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66-42전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중로	1	1	20	집분산	168.8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66-42전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중로	1	2	20	집분산	143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66-23대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중로	1	2	20	집분산	142.5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66-23대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중로	1	3	20	집분산	190	(소2) 대로3-1	(소2) 중로3-3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중로	1	3	20	집분산	191.6	(소2) 대로3-1	(소2) 중로3-3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중로	2	1	15	집분산	7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81-13대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중로	2	1	15	집분산	6.8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81-13대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중로	3	1	12	집분산	9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300답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중로	3	1	12	집분산	9.6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300답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중로	3	2	12	집분산	9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99-1전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중로	3	2	12	집분산	9.7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99-1전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중로	3	3	12	집분산	147	(소2) 중로1-3	소사본동 297-11대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중로	3	3	12	집분산	145.7	(소2) 중로1-3	소사본동 297-11대	일반도로	-	-	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(소2) 소로	3	4	12	국지	5	(소2) 대로3-1	괴안동 산13-10임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중로	3	4	12	국지	5.1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407-1대	일반도로			
기정	(소2) 중로	3	5	12	집분산	14	(소2) 중로1-2	(소2) 소로1-2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중로	3	5	12	집분산	13.7	(소2) 중로1-2	(소2) 소로1-2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중로	3	6	12	집분산	6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94-93대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중로	3	6	12	집분산	6.2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94-93대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소로	1	1	10	국지	28	(소2) 대로3-1	괴안동 154-3잡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소로	1	1	10	국지	27.5	(소2) 대로3-1	괴안동 241-8대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소로	1	2	10	국지	139	(소2) 소로 2-6	소사본동 266-48임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소로	1	2	10	국지	141.7	(소2) 소로 2-6	소사본동 266-48임	일반도로	-	-	
신설	(소2) 소로	1	3	10	국지	101.8	(소2) 소로 1-4	(소2) 중로 3-7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소로	2	1	8	국지	18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325답	일반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2	1	8	국지	17.3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325답	일반도로			
기정	(소2) 소로	2	2	8	국지	85	(소2) 소로1-2	괴안동 204-24대	일반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2	2	8	국지	85.1	(소2) 소로1-2	괴안동 204-24대	일반도로			
기정	(소2) 소로	2	3	8	국지	183	(소2) 대로3-1	(소2) 소로1-1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소로	2	3	8	국지	182.1	(소2) 대로3-1	(소2) 소로1-1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소로	2	4	8	국지	113	(소2) 중로1-1	(소2) 중로1-3	일반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1	4	10	국지	79.1	(소2) 중로 1-1	(소2) 중로 3-7	일반도로			
변경	(소2) 중로	3	7	14	국지	36.7	(소2) 소로3-4	(소2) 중로1-3	일반도로			
기정	(소2) 소로	2	5	8	국지	12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78-72전	일반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2	5	8	국지	8.0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78-72전	일반도로			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(소2) 소로	2	6	8	국지	37	(소2) 소로1-2	피안동 204-1대	일반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2	6	8	국지	34.7	(소2) 소로1-2	피안동 204-1대	일반도로	-	-	
기정	(소2) 소로	2	7	8	특수	8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281-46대	보행자 전용도로	-	-	
변경	(소2) 소로	3	9	4	특수	7.7	(소2) 대로3-1	소사본동 411-1대	보행자 전용도로	-	-	
기정	(소2) 소로	3	1	6	국지	61	(소2) 소로2-2	(소2) 소로2-2	일반도로	-	-	
변경	(소2) 소로	3	1	6	국지	60.6	(소2) 소로1-2	(소2) 소로2-2	일반도로			
기정	(소2) 소로	3	2	6	국지	59	(소2) 소로1-2	(소2) 소로2-2	일반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3	2	6	국지	58.6	(소2) 소로1-2	(소2) 소로2-2	일반도로			
기정	(소2) 소로	3	3	6	특수	18	(소2) 대로3-1	(소2) 소로2-3	보행자 전용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3	3	6	특수	18.4	(소2) 대로3-1	(소2) 소로2-3	보행자 전용도로			
기정	(소2) 소로	3	4	3	특수	116	(소2) 중로1-1	(소2) 중로2-2	보행자 전용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3	4	3	특수	118.1	(소2) 중로1-1	(소2) 중로2-2	보행자 전용도로			
기정	(소2) 소로	3	5	4	특수	14	(소2) 중로1-2	(소2) 소로1-2	보행자 전용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3	5	4	국지	13.8	(소2) 중로1-2	(소2) 소로1-2	일반도로			
기정	(소2) 소로	3	6	5	특수	118	(소2) 중로1-1	(소2) 중로1-3	보행자 전용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3	6	5	특수	119.0	(소2) 중로1-1	(소2) 중로1-3	보행자 전용도로			
기정	(소2) 소로	3	7	4	특수	2	(소2) 소로2-3	피안동 산13-11임	보행자 전용도로			
변경	(소2) 소로	3	7	4	특수	5.8	(소2) 소로2-3	피안동 산13-11임	보행자 전용도로			
신설	(소2) 소로	3	8	6	집산	2.7	(소2) 대로3-1	범박동 151-22임	일반도로			

●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(소2)대로 3-1호선	(소2)대로 3-1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40,377m <sup>2</sup> →39,615.1m <sup>2</sup> ) (L=1,254m→1251.5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중로 1-1호선	(소2)중로 1-1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3,640m <sup>2</sup> →3,672m <sup>2</sup> ) (L=167m→168.8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중로 1-2호선	(소2)중로 1-2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2,959m <sup>2</sup> →2,952.6m <sup>2</sup> ) (L=143m→142.5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중로 1-3호선	(소2)중로 1-3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3,720m <sup>2</sup> →3,734.9m <sup>2</sup> ) (L=190m→191.6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중로 2-1호선	(소2)중로 2-1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134m <sup>2</sup> →131.8m <sup>2</sup> ) (L=7m→6.8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중로 3-1호선	(소2)중로 3-1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108m <sup>2</sup> →142.5m <sup>2</sup> ) (L=9m→9.6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중로 3-2호선	(소2)중로 3-2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108m <sup>2</sup> →146.3m <sup>2</sup> ) (L=9m→9.7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중로 3-3호선	(소2)중로 3-3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1,752m <sup>2</sup> →1,792.3m <sup>2</sup> ) (L=147m→145.7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중로 3-4호선	(소2)중로 3-4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56m <sup>2</sup> →62.2m <sup>2</sup> ) (L=5m→5.1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중로 3-5호선	(소2)중로 3-5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167m <sup>2</sup> →163.6m <sup>2</sup> ) (L=14m→13.7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중로 3-6호선	(소2)중로 3-6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72m <sup>2</sup> →95.9m <sup>2</sup> ) (L=6m→6.2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1-1호선	(소2)소로 1-1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297m <sup>2</sup> →311.2m <sup>2</sup> ) (L=28m→27.5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1-2호선	(소2)소로 1-2호선	면적변경 (A=1,390m <sup>2</sup> →1,423.5m <sup>2</sup> ) (L=139m <sup>2</sup> →141.7m <sup>2</sup> 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-	(소2)소로 1-3호선	도로신설	· 조서 누락에 따른 착오정정
(소2)소로 2-1호선	(소2)소로 2-1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140m <sup>2</sup> →142.0m <sup>2</sup> ) (L=18m→17.3m)	· 확정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(소2)소로 2-2호선	(소2)소로 2-2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681m <sup>2</sup> →680.9m <sup>2</sup> ) (L=85m→85.1m)	·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2-3호선	(소2)소로 2-3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1,487m <sup>2</sup> →1,470.4m <sup>2</sup> ) (L=184m→182.1m)	·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2-4호선	(소2)중로 3-7호선	연장, 노선 번호 변경 (L=115.6m→36.7m)	· 착오정정에 따른 2-4호선을 두개의 노선으로 분리
	(소2)소로 1-4호선	연장, 노선 번호 변경 (L=115.6m→79.1m)	· 착오정정에 따른 2-4호선을 두개의 노선으로 분리
(소2)소로 2-5호선	(소2)소로 2-5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109m <sup>2</sup> →98.1m <sup>2</sup> ) (L=12m→8.0m)	·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2-6호선	(소2)소로 2-6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314m <sup>2</sup> →284.9m <sup>2</sup> ) (L=37m→34.7m)	·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2-7호선	(소2)소로 3-9호선	면적 변경 (A=64m <sup>2</sup> →32.9m <sup>2</sup> ) (L=8m→7.7m)	· 횡단보도 폐쇄에 따른 보행자 도로 위치 및 폭원 조정
(소2)소로 3-1호선	(소2)소로 3-1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378m <sup>2</sup> →376.9m <sup>2</sup> ) (L=61m→60.6m)	·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3-2호선	(소2)소로 3-2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365m <sup>2</sup> →366.0m <sup>2</sup> ) (L=59m→58.6m)	·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3-3호선	(소2)소로 3-3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72m <sup>2</sup> →73.6m <sup>2</sup> ) (L=18m→18.4m)	·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3-4호선	(소2)소로 3-4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366m <sup>2</sup> →365.7m <sup>2</sup> ) (L=116m→118.1m)	·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3-5호선	(소2)소로 3-5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56m <sup>2</sup> →55.3m <sup>2</sup> ) (L=14m→13.8m)	·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보차 혼용이 가능한 일반도로로 변경
(소2)소로 3-6호선	(소2)소로 3-6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620m <sup>2</sup> →591.0m <sup>2</sup> ) (L=118m→119.0m)	·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
(소2)소로 3-7호선	(소2)소로 3-7호선	면적, 연장변경 (A=8m <sup>2</sup> →23.5m <sup>2</sup> ) (L=2m→5.8m)	· 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
-	(소2)소로 3-8호선	도로신설	· 지구 외 주거지역 연결 위한 신설 도로

## 2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### ●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 변경	(소2) 1	노외주차장	부천시 소사본동 325 답 일원	1,296	증) 15.2	1,311.2	-	소사국민 체육센타 부설주차 장
			부천시 소사본동 414차					
기정 변경	(소2) 2	노외주차장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 대 일원	491	증) 4.2	495.2	-	
			부천시 괴안동 234-2차					
기정 변경	(소2) 3	노외주차장	부천시 괴안동 산13 임 일원	568	증) 29.0	597.0	-	
			부천시 괴안동 241-3차					
기정 변경	(소2) 4	노외주차장	부천시 괴안동 153 잡 일원	445	감) 1.3	443.7	-	
			부천시 괴안동 242-12차					
기정 변경	(소2) 5	노외주차장	부천시 소사본동 266-29 전 일원	621	감) 8.7	612.3	-	
			부천시 소사본동 409-2차					

### ●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(소2) 1	노외주차장	·면적변경 - 1,296m <sup>2</sup> → 1,311.2m <sup>2</sup> (증 15.2m <sup>2</sup> )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2	노외주차장	·면적변경 - 491m <sup>2</sup> → 495.2m <sup>2</sup> (증 4.2m <sup>2</sup> )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3	노외주차장	·면적변경 - 면적 : 568m <sup>2</sup> →597m <sup>2</sup> (증 29m <sup>2</sup> )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4	노외주차장	·면적변경 - 면적 : 445m <sup>2</sup> →443.7m <sup>2</sup> (감 1.3m <sup>2</sup> )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5	노외주차장	·면적변경 - 면적 : 621m <sup>2</sup> →612.3m <sup>2</sup> (감 8.7m <sup>2</sup> )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
### 3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#### ●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 변경	(소2) 1	공원	어린이 공원	부천시 소사본동 285-5점 일원	2,596	증) 0.1	2,596.1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11-8공					
기정 변경	(소2) 2	공원	어린이 공원	부천시 소사본동 278-6대 일원	1,646	감) 4.1	1,641.9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08-4공					
기정 변경	(소2) 3	공원	어린이 공원	부천시 소사본동 266-12전 일원	2,293	감) 9.4	2,283.6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07-5공					

#### ●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(소2) 1	어린이 공원	·면적변경 - 2,596m <sup>2</sup> →2,596.1m <sup>2</sup> (증 0.1m <sup>2</sup> )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 번 정정
(소2) 2	어린이 공원	·면적변경 - 1,646m <sup>2</sup> →1,641.9m <sup>2</sup> (감 4.1m <sup>2</sup> )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 번 정정
(소2) 3	어린이 공원	·면적변경 - 2,293m <sup>2</sup> →2,283.6m <sup>2</sup> (감 9.4m <sup>2</sup> )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 번 정정

### 4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#### ● 완충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 변경	(소2) 1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323-2 담 일원	1,191	증)112.5	1,303.5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20공					
기정 변경	(소2) 2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300 담 일원	353	감)78.8	274.2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19공					
기정 변경	(소2) 3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94-93 담 일원	840	감)28.1	811.9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18-1공					
기정 변경	(소2) 4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81-1 대 일원	915	증)98.5	1,013.5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17-1공					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기정 변경	(소2) 5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82 답 일원	541	증)169.6	710.6	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11-7공					
기정 변경	(소2) 6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81-11 대 일원	718	감)85.8	632.2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16-1공					
기정 변경	(소2) 7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81-56 대 일원	1,105	감)87.4	1,017.6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11-4,5공					
기정 변경	(소2) 8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66-11 전 일원	1,052	증)3.8	1,048.2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08-3공					
기정 변경	(소2)9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66-48 임 일원	654	증)21.4	675.4	-	
				부천시 괴안동 238-10공					
기정 변경	(소)10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66-48 임 일원	510	증)8.9	518.9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07-4공					
기정 변경	(소)2)11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괴안동 산13-4임 일원	845	감)388	596.6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07-2공, 범박동157-4					
변경	(소)2)14			부천시 범박동 157-2공	-	증)257.0	257.0		
기정 변경	(소)2)12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괴안동 151 전 일원	267	감)39.6	227.4	-	
				부천시 괴안동 242-7공					
기정 변경	(소)2)13	녹지	완충녹지	부천시 괴안동 152-2 잡 일원	138	증)20.8	158.8	-	
				부천시 괴안동 242-13공					

### ● 완충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(소2) 1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1,191m <sup>2</sup> →1,303.5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2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353m <sup>2</sup> →274.2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3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840m <sup>2</sup> →811.9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4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915m <sup>2</sup> →1,013.5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(소2) 5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$541\text{m}^2 \rightarrow 710.6\text{m}^2$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6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$718\text{m}^2 \rightarrow 632.2\text{m}^2$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7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$1,105\text{m}^2 \rightarrow 1,017.6\text{m}^2$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8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$1,052\text{m}^2 \rightarrow 1,048.2\text{m}^2$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9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$654\text{m}^2 \rightarrow 675.4\text{m}^2$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10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$510\text{m}^2 \rightarrow 518.9\text{m}^2$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11	완충녹지	·면적, 도면표시번호 변경(녹지분리) - (소2)11 → (소2)11, (소2)14 - $845\text{m}^2 \rightarrow 596.6\text{m}^2, 257.0\text{m}^2$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 ·도로 신설에 의한 녹지 분리로 면적축소
(소2) 12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$267\text{m}^2 \rightarrow 227.4\text{m}^2$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13	완충녹지	·면적변경 - $138\text{m}^2 \rightarrow 158.8\text{m}^2$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14	완충녹지	·면적, 도면표시번호 변경(녹지분리) - (소2)11 → (소2)11, (소2)14 - $845\text{m}^2 \rightarrow 596.6\text{m}^2, 257.0\text{m}^2$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 ·도로 신설에 의한 녹지 분리

### ● 경관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 $\text{m}^2$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 변경	(소2) 1	녹지	경관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333 답 일원	1,410	증)17	1,427.0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15공					
기정 변경	(소2) 2	녹지	경관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98-2 답 일원	3,645	감)82.8	3,562.2	-	
				부천시 소사본동 412공					
기정 변경	(소2) 3	녹지	경관녹지	부천시 괴안동 산13 임 일원	540	증)18.8	558.8		
				부천시 괴안동 241-1공					
기정	(소2) 4	녹지	경관녹지	부천시 괴안동 산13임 일원	107	-	-		
기정	(소2) 5			부천시 괴안동 산13임 일원	165	감)165	-		
변경	(소2) 4			부천시 괴안동 241-4공		증)145.2	252.2		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(소2) 6	녹지	경관녹지	부천시 괴안동 154-1 전 일원	416	증)2.8	418.8		
변경	(소2) 5			부천시 괴안동 241-8공					
기정	(소2) 7	녹지	경관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81-4 대 일원	1,661	증)23.0	1,684.0	-	
변경	(소2) 6			부천시 소사본동 409-11공					
기정	(소2) 8	녹지	경관녹지	부천시 소사본동 266-27 전 일원	1,268	감)4.7	1,263.3	-	
변경	(소2) 7			부천시 소사본동 411-2공					

### ● 경관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(소2) 1	경관녹지	·면적변경 - 1,410m <sup>2</sup> →1,427.0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2	경관녹지	·면적변경 - 3,645m <sup>2</sup> →3,652.2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3	경관녹지	·면적변경 - 540m <sup>2</sup> →558.8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4	경관녹지	·면적, 도면표시번호 변경 - (소2)4, (소2)5 →(소2)4 - 107m <sup>2</sup> , 165m <sup>2</sup> →252.2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 ·보행자도로 위치변경에 의한 녹지합병
(소2) 5	경관녹지	·면적, 도면표시번호 변경 - (소2)4, (소2)5 →(소2)4 - 107m <sup>2</sup> , 165m <sup>2</sup> →252.2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 ·보행자도로 위치변경에 의한 녹지합병
(소2) 6	경관녹지	·면적, 도면표시번호 변경 - (소2)6→(소2)5 - 416m <sup>2</sup> →418.8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7	경관녹지	·면적변경, 도면표시번호 변경 - (소2)7→(소2)6 - 1,661m <sup>2</sup> →1,684.0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(소2) 8	경관녹지	·면적변경, 도면표시번호 변경 - (소2)8 →(소2)7 - 1,268m <sup>2</sup> →1,263.3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
## 5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### ●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35	공공 청사	-	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41-7번지	2,889.4	감)2,889.4	-	-	-

## 6) 청소년수련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### ● 청소년수련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(소2) 1	청소년 수련시설	청소년 수련관	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41-7번지	-	증)2,889.4	2,889.4	-	-

### ●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 사유
(소2) 1	청소년 수련시설	·신설 청소년수련시설	·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소사구 지역에 거점 시설로 설치하여 청소년수련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을 지역 간 균형 있게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청소년수련 시설로 변경(신설)결정

## 7) 학교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### ●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 변경	(소2) 1	학 교	초등학교	부천시 소사본동 266-33 잡 일원 부천시 소사본동 409-9학	11,975	증)9.5	11,984.5		

### ● 학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(소2) 1	초등학교	·면적변경 - 11,975m <sup>2</sup> →11,984.5m <sup>2</sup>	·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

## 2. 가구 및 흙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

### 가. 일반계획

#### ■ 공동주택용지 : 변경없음

- 공동주택은 도시의 주변여건과 개발가능축,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, 기존 도시계획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어린이공원, 단지내 상가, 어린이놀이터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정
- 가구규모는 최소한 소규모의 생활편익시설을 갖출 수 있고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공급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구단위로 block을 구획
- 공동주택의 가구규모는 아파트 건설에 적합하도록 장변 170 ~ 300m, 단변 60 ~ 230m 범위로 계획

#### ■ 단독주택용지 : 변경없음

- 주간선도로,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변과 완충녹지변에는 흙지배열시 1열 배열이 되도록 하며 그 배면은 2열 배열이 되도록 함
- 가구방향은 주택의 남향배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한 남북 및 동서 장방향으로 계획
- 단변 14 ~ 30m, 가구의 장변은 40 ~ 85m로 계획하며 규모는 419.3 ~ 1,774.3m<sup>2</sup>에서 다양한 규모로 계획

#### ■ 준주거용지 : 변경없음

- 인접도로의 성격과 구역내에서 차지하는 위계적 위치, 입지예상 건축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가구의 규모를 결정
- 접근성과 인지도를 고려하여 간선가로변에 접하는 가구의 규모를 내부가구 규모보다 크게 구획하며 동일한 상업시설용지내에서도 가구의 규모를 조정하여 가구계획을 수립
- 가구내 차량진입은 후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부에 서비스도로를 설치하여 전면도로의 교통혼잡 해소 및 보행동선의 보호,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
- 가구의 규모는 입지여건에 따라 단변 26m, 장변 60 ~ 69m로 계획

#### ■ 공공시설용지 : 변경없음

- 공공시설의 용도별 시설물계획에 적합하도록 흙지규모를 설정

## 나. 가구 및 흙지 결정(변경)

### ■ 공동주택용지

도면번호 (흙지번호)	면적(m <sup>2</sup> )		흙지				비고	
	기정	변경	위치		면적(m <sup>2</sup> )			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계	93,249	93,227.6	-	-	93,249	93,227.6	제3종 일반주거지역	
B L 1	20,544	20,628.5	소사본동 266답 일원	소사본동 408-1대	20,544	20,628.5		
B L 2	13,727	13,688.8	괴안동 산13-5임 일원	소사본동 407-1대	13,727	13,688.8		
B L 3	58,978	58,910.3	소사본동 281답 일원	소사본동 441-1대	58,978	58,910.3		

### ■ 단독주택용지

#### ◦ 기정

도면번호 (흙지번호)	가구 번호	면적(m <sup>2</sup> )	흙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
계	-	7,991	-	7,991	제1종 일반주거지역
- 1	A 1	972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189	
- 2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189	
- 3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01	
- 4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05	
- 5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188	
- 6	A 2	1,771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11	
- 7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25	
- 8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25	
- 9			부천시 괴안동 204-14답 일원	230	
- 10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31	
- 11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25	
- 12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25	
- 13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199	
- 14	A 3	1,587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183	
- 15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22	
- 16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22	
- 17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233	
- 18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194	
- 19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193	
- 20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193	
- 21			부천시 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146	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가구 번호	면적(m <sup>2</sup> 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
- 22	A 4	427	부천시 괴안동 산13임 일원	212	
- 23			부천시 괴안동 산13임 일원	215	
- 24	A 5	1,281	부천시 괴안동 151-13전 일원	210	
- 25			부천시 괴안동 151전 일원	213	
- 26			부천시 괴안동 151전 일원	213	
- 27			부천시 괴안동 산13임 일원	213	
- 28			부천시 괴안동 산13임 일원	213	
- 29			부천시 괴안동 152-1잡 일원	219	
- 30			부천시 괴안동 151-13전 일원	211	
- 31	A 6	1,302	부천시 괴안동 151전 일원	216	
- 32			부천시 괴안동 151전 일원	216	
- 33			부천시 괴안동 산13임 일원	217	
- 34			부천시 괴안동 산13임 일원	218	
- 35			부천시 괴안동 152-1잡 일원	224	
- 36			부천시 괴안동 산13임 일원	217	
- 37	A 7	651	부천시 괴안동 산13임 일원	217	
- 38			부천시 괴안동 152-2잡 일원	217	

### ◦ 변경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가구 번호	면적(m <sup>2</sup> 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
계	-	7,990.8	-	7,990.8	제1종 일반주거지역
- 1	A 1	961.0	부천시 괴안동 235-1대	188.4	
- 2			부천시 괴안동 235-2대	181.8	
- 3			부천시 괴안동 223-3대	196.9	
- 4			부천시 괴안동 235-4대	208.1	
- 5			부천시 괴안동 235-5대	185.8	
- 6	A 2	1,774.3	부천시 괴안동 236-1대	221.3	
- 7			부천시 괴안동 236-2대	226.7	
- 8			부천시 괴안동 236-3대	226.8	
- 9			부천시 괴안동 236-4 대	225.7	
- 10			부천시 괴안동 236-5대	228.7	
- 11			부천시 괴안동 236-6대	227.6	
- 12			부천시 괴안동 236-7대	227.1	
- 13			부천시 괴안동 236-8대	199.4	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가구 번호	면적(m <sup>2</sup> 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
- 14	A 3	1,592.4	부천시 괴안동 237-1대	184.0	
- 15			부천시 괴안동 237-2대	222.6	
- 16			부천시 괴안동 237-3대	222.3	
- 17			부천시 괴안동 237-4대	228.8	
- 18			부천시 괴안동 237-5대	193.6	
- 19			부천시 괴안동 237-6대	196.1	
- 20			부천시 괴안동 237-7대	196.1	
- 21			부천시 괴안동 237-8대	148.9	
- 22	A 4	419.3	부천시 괴안동 238-1대	208.6	
- 23			부천시 괴안동 238-1대	210.7	
- 24	A 5	1,282.9	부천시 괴안동 238-4대	211.3	
- 25			부천시 괴안동 238-5대	213.3	
- 26			부천시 괴안동 238-6대	213.3	
- 27			부천시 괴안동 238-7대	213.3	
- 28			부천시 괴안동 238-8대	213.3	
- 29			부천시 괴안동 238-9대	218.4	
- 30	A 6	1,307.2	부천시 괴안동 242-1대	214.6	
- 31			부천시 괴안동 242-2대	218.8	
- 32			부천시 괴안동 242-3대	217.4	
- 33			부천시 괴안동 242-4대	216.5	
- 34			부천시 괴안동 242-5대	216.6	
- 35			부천시 괴안동 242-6대	223.3	
- 36	A 7	653.7	부천시 괴안동 242-9대	217.9	
- 37			부천시 괴안동 242-10대	218.0	
- 38			부천시 괴안동 242-11대	217.8	

## ■ 준주거용지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가구 번호	면적(m <sup>2</sup> )		획 지				비고	
		기정	변경	위 치		면 적(m <sup>2</sup> )			
	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계	-	4,054	3,998.0	-	-	4,054	3,998.0		
- 1	C1	2,235	2,204.2	소사본동 266-27전 일원	소사본동 409-1대	1,403	1,383.7		
- 2				소사본동 266-29전 일원	소사본동 409-6대	832	820.5		
- 1	C2	1,819	1,793.8	소사본동 266-27전 일원	소사본동 409-3대	1,308	1,289.8		
- 2				소사본동 266-28전 일원	소사본동 409-4대	511	504.0		

## ■ 주차장용지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면적(m <sup>2</sup> )		획지				비고	
	기정	변경	위치		면적(m <sup>2</sup> )			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계	3,421	3,459.4	-		3,421	3,459.4		
(소2) 주 1	1,296	1,311.2	소사본동 325답 일원	소사본동 414차	1,296	1,311.2	노외주차장	
(소2) 주 2	491	495.2	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괴안동 234-2차	491	495.2	노외주차장	
(소2) 주 3	568	597.0	괴안동 산13임 일원	괴안동 241-3차	568	597.0	노외주차장	
(소2) 주 4	445	443.7	괴안동 153답 일원	괴안동 242-12차	445	443.7	노외주차장	
(소2) 주 5	621	612.3	소사본동 266-29전 일원	소사본동 409-2차	621	612.3	노외주차장	

## ■ 공원용지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면적(m <sup>2</sup> )		획지				비고	
	기정	변경	위치		면적(m <sup>2</sup> )			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계	6,535	6,521.6	-	-	6,535	6,521.6		
(소2) 어 1	2,596	2,596.1	소사본동 285-5답 일원	소사본동 411-8공	2,596	2,596.1	어린이공원	
(소2) 어 2	1,646	1,641.9	소사본동 278-6대 일원	소사본동 408-4공	1,646	1,641.9	어린이공원	
(소2) 어 3	2,293	2,283.6	소사본동 266-12전 일원	소사본동 407-5공	2,293	2,283.6	어린이공원	

## ■ 완충녹지용지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	면적(m <sup>2</sup> )		획 지				비 고	
기정	변경	기정	변경	위 치		면 적(m <sup>2</sup> )			
	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계		9,396	9,244.2	-		-	9,396	9,245.8	
(소2) 완 1		1,191	1,303.5	소사본동 323-2답 일원	소사본동 420공	1,191	1,303.5		
(소2) 완 2		353	274.2	소사본동 300답 일원	소사본동 419공	353	274.2		
(소2) 완 3		840	811.9	소사본동 294-93답 일원	소사본동 418-1공	840	811.9		
(소2) 완 4		915	1,013.5	소사본동 281-1대 일원	소사본동 417-1공	915	1,013.5		
(소2) 완 5		541	710.6	소사본동 282답 일원	소사본동 411-7공	541	710.6		
(소2) 완 6		718	632.2	소사본동 281-11대 일원	소사본동 416-1공	718	632.2		
(소2) 완 7		1,105	1,017.6	소사본동 281-56임 일원	소사본동 411-4,5공	1,105	1,017.6		
(소2) 완 8		1,052	1,048.2	소사본동 266-11전 일원	소사본동 408-3	1,052	1,048.2		
(소2) 완 9		654	673.8	괴안동 산13-10임 일원	괴안동 238-10공	654	675.4		
(소2) 완 10		510	518.9	소사본동 266-48임 일원	소사본동 407-4공	510	518.9		
(소2) 완 11		845	596.6	괴안동 산13-4임 일원	소사본동 407-2공	845	596.6	녹지 분할	
			257.0		범박동 157-4공		257.0		
(소2) 완 12		267	227.4	괴안동 151전 일원	괴안동 242-7공	267	227.4		
(소2) 완 13		138	158.8	괴안동 152-2답 일원	괴안동 242-13공	138	158.8		

## ■ 경관녹지용지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면적(m <sup>2</sup> )		획지				비고	
	기정	변경	위치		면적(m <sup>2</sup> )			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계	9,212	9,256.3	-	-	9,212	9,256.3		
(소2) 경 1	1,410	1,427.0	소사본동 333답 일원	소사본동 415공	1,410	1,427.0		
(소2) 경 2	3,645	3,652.2	소사본동 298-2답 일원	소사본동 412공	3,645	3,652.2		
(소2) 경 3	540	558.8	괴안동 산13임 일원	괴안동 241-1공	540	558.8		
(소2) 경 4	107	252.2	괴안동 산13임 일원	괴안동 241-4공	107	252.2	녹지 합병	
(소2) 경 5	165				165			
(소2) 경 6	(소2) 경 5	416	418.8	괴안동 154-1전 일원	괴안동 241-8공	416	418.8	
(소2) 경 7	(소2) 경 6	1,661	1,684.0	소사본동 281-4대 일원	소사본동 409-11공	1,661	1,684.0	
(소2) 경 8	(소2) 경 7	1,268	1,263.6	소사본동 266-27전 일원	소사본동 411-2공	1,268	1,263.6	

## ■ 공공청사용지(폐지)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면적(m <sup>2</sup> )		획지				비고	
	기정	변경	위치		면적(m <sup>2</sup> )			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계	2,889.4	-	-	-	2,889.4	-		
(소2) 청 1	2,889.4	-	소사본동 325답 일원	괴안동 241-7대	2,889.4	-		

## ■ 청소년수련시설용지 (공공청사용지→청소년수련시설용지)

도면표시 번호	면적(m <sup>2</sup> )	획지		비고
	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
(소2) 1	2,889.4	괴안동 241-7번지		2,889.4

## ■ 유치원용지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면적(m <sup>2</sup> )		획 지				비 고	
	기정	변경	위 치		면 적(m <sup>2</sup> )			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계	800	800.9	-	-	800	800.9		
유	800	800.9	소사본동 266-12전 일원	소사본동 407-6대	800	800.9		

## ■ 학교용지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면적(m <sup>2</sup> )		획 지				비 고	
	기정	변경	위 치		면 적(m <sup>2</sup> )			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계	11,975	11,984.5	-	-	11,975	11,984.5		
(소2)초	11,975	11,984.5	소사본동 266-33잡 일원	소사본동 409-9학	11,975	11,984.5	초등학교	

## ■ 종교시설용지

도면번호 (획지번호)	면적(m <sup>2</sup> )		획 지				비 고	
	기정	변경	위 치		면 적(m <sup>2</sup> )			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계	6,665	6,658.2	-	-	6,665	6,658.2		
(소2) 종 1	962	920.9	소사본동 278-6대 일원	소사본동 408-5종	962	920.9		
(소2) 종 2	1,064	1,087.5	소사본동 265-39전 일원	소사본동 408-2종	1,064	1,087.5		
(소2) 종 3	594	608.0	소사본동 266-20대 일원	괴안동 234-1종	594	608.0		
(소2) 종 4	480	478.3	소사본동 204-14잡 일원	괴안동 234-3종	480	478.3		
(소2) 종 5	760	762.3	괴안동 154-3잡 일원	괴안동 241-6종	760	762.3		
(소2) 종 6	893	887.2	소사본동 297-18대 일원	소사본동 409-5종	893	887.2		
(소2) 종 7	520	522.0	괴안동 산13임 일원	괴안동 241-2종	520	522.0		
(소2) 종 8	1,392	1,392.0	소사본동 301-85답 일원	소사본동 413종	1,392	1,392.0		

### 3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

#### ■ 공동주택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分	계 획 내 용
	1BL ~ 3BL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정용도 :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</li> <li>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
		건 폐 율	25%이하
		용 적 률	210%이하
		높 이	20층 이하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동주택지는 획일적 배치가 될 경우 단조로운 경관의 조성이 우려되므로 변화된 공간조성이 가능하도록 통풍과 일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배치를 도모</li> <li>모든 공동주택은 개방감을 주도록 충분한 주동간 거리를 확보</li> </ul>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 형태는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계획</li> </ul>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으로 구분하고, 주변 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</li> <li>주변 미관을 고려한 조명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한다.</li> </ul>
		건 축 선	-

#### ■ 단독주택용지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分	계 획 내 용
	A 1 ~ A 7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정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, 다가구주택(4가구이하),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(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4항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의 40%이내) 다만,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㎡이상인 것과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종교집회장, 옥외체육시설 치된 골프연습장과 학교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학교 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는 제외</li> <li>불허용도 : 지정용도외 불허</li> </ul>
		건 폐 율	60%이하
		용 적 률	180%이하
		높 이	3층이하(지상1층 층고제한 : 4.5m이내)
			3층이하(지상1층 층고제한 : 4.5m이내)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하며,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으로 건축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6조 및 부천시 건축조례 제30조의 기준에 의한 이격거리를 확보</li> </ul>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독주택지의 지붕형태는 획일적인 평지붕 형태를 지양하여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계획</li> </ul>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건축물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</li> </ul>
		건 축 선	20m 도로변 1m

## ■ 준주거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C	용 도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정용도 :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내에서 허용 용도. 다만, 공장, 창고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, 공공용시설과 학교정화구역내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 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는 제외</li> <li>불허용도 : 지정용도외 불허</li> </ul>	
		건폐율	◦ C1-1·2, C2-1·2	60%이하
		용적률	◦ C1-1, C2-1	400%이하
			◦ C1-2, C2-2	300%이하
		높이	◦ C1-1, C2-1	7층이하
			◦ C1-2, C2-2	5층이하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후면으로 2면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도로를 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20m이상도로에 2면이상 접한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</li> </ul>	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며,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상징성을 줄수 있도록 구성을 도모</li> </ul>	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벽면 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, 그 이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성</li> <li>주변 미관을 고려한 조명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한다</li> </ul>	
			◦ 대로3-1호선변 2m, 종로1-1호선 및 2-2호선변 1m	

## ■ 공공청사용지 : 폐지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공공청사	용 도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정용도 : 공공청사(부지내 도서관 건립 가능)</li> <li>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	
		건폐율	◦ 50%이하	
		용적률	◦ 250%이하	
		높이	◦ 5층이하	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청사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</li> <li>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</li> </ul>	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변도로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건물의 규모 및 배치, 외장 및 색채계획 강화</li> </ul>	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외장은 용도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</li> </ul>	
		건축선		-

## ■ 청소년수련시설용지 : 신설

도면번호	위치 (가구번호)	구분	계획내용
공공청사	용도	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정용도 : 청소년수련시설</li> <li>◦ 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
	건폐율	건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50%이하</li> </ul>
	용적률	용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250%이하</li> </ul>
	높이	높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5층이하</li> </ul>
	배치	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</li> <li>◦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</li> </ul>
	형태	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주변도로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건물의 규모 및 배치, 외장 및 색채계획 강화</li> </ul>
	색채	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건축물의 외장은 용도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</li> </ul>
	건축선	건축선	-

## ■ 학교용지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치 (가구번호)	구분	계획내용
(소2)초	용도	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정용도 : 초등학교</li> <li>◦ 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
	건폐율	건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30%이하</li> </ul>
	용적률	용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150%이하</li> </ul>
	높이	높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5층이하</li> </ul>
	배치	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사의 배치는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전면방향을 동남향으로 배치하고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측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건강한 운동공간을 제공</li> </ul>
	형태	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을 지양하며,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면학분위기 제고를 도모</li> </ul>
	색채	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건축물의 외장은 지구전체에 걸쳐 시설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</li> </ul>
	건축선	건축선	-

## ■ 유치원용지 : 변경없음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유	용 도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정용도 : 유치원,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 2호에 설치 가능한 용도(대통령령제17999호 부칙 제5조 규정 적용)</li> <li>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
		건 폐 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0%이하</li> </ul>
		용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50%이하</li> </ul>
		높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층이하</li> </ul>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배치는 주변 어린이 공원과 연계가능하도록 하여 유아의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</li> </ul>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을 지양하며,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</li> </ul>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외장은 지구전체에 걸쳐 시설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</li> </ul>
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면부 2m</li> </ul>

## ■ 종교시설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종 1 ~ 종 8	용 도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정용도 - 종교시설(납골당 제외)</li> <li>불허용도 -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
		건 폐 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1 ~ 종5, 종7, 종8</li> </ul>
		종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0%이하</li> </ul>
		용 적 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1 ~ 종5, 종7, 종8</li> </ul>
		종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%이하</li> </ul>
		높 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0%이하</li> </ul>
		종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00%이하</li> </ul>
		종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층 이하</li> </ul>
		종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층 이하</li> </ul>
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지여건 및 일조권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남향으로 배치</li> </ul>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형태는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</li> </ul>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외장은 지구전체에 걸쳐 시설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</li> </ul>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5m 도로변에 접하는 경우 2m</li> </ul>

■ 주차장용지 : 변경없음

도면 번호	위 치 (기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					
	(소2)주1 ~ (소2)주5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정용도 - 주차장법 및 그부대시설(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4항) 주차장전용 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전체 연면적의 30%범위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시설물 허용(단, 공공업무시설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관람장은 제외)</li> <li>◦ 불허용도 -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						
		건폐율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주1</td><td>◦ 50%이하</td></tr> <tr> <td>주2 ~ 5</td><td>◦ 60%이하</td></tr> </table>	주1	◦ 50%이하	주2 ~ 5	◦ 60%이하		
주1	◦ 50%이하								
주2 ~ 5	◦ 60%이하								
		용적률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주1</td><td>◦ 250%이하</td></tr> <tr> <td>주2 ~ 4</td><td>◦ 180%이하</td></tr> <tr> <td>주5</td><td>◦ 300%이하</td></tr> </table>	주1	◦ 250%이하	주2 ~ 4	◦ 180%이하	주5	◦ 300%이하
주1	◦ 250%이하								
주2 ~ 4	◦ 180%이하								
주5	◦ 300%이하								
		높이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주1, 주5</td><td>◦ 5층 이하</td></tr> <tr> <td>주2 ~ 4</td><td>◦ 3층 이하</td></tr> </table>	주1, 주5	◦ 5층 이하	주2 ~ 4	◦ 3층 이하		
주1, 주5	◦ 5층 이하								
주2 ~ 4	◦ 3층 이하								
		배 치	-						
		형 태	-						
		색 채	-						
		건축선	◦ 대로3-1호선변 2m						

## 4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

### ■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

도면 번호	위치	계획 내용		비고
		차량동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이외에 한하여 설치토록 규제하고 간선도로변은 통행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</li> <li>◦ 대로에서의 차량 진출입은 금지하고, 후면 및 이면도로에서 진출입구 확보</li> </ul>	
		보행동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구가 대단지임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 편리를 고려하여 주택용지와 상업 및 학교시설과 연계되는 보행축을 계획</li> <li>◦ 어린이공원과 도로변 녹지축과 연계한 보행자 도로 계획</li> </ul>	
	주차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주차장은 부천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</li> </ul>	

### 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도면 번호	위치	계획 내용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건축선후퇴로 생기는 전면부의 공개공지는 담장이나 기타 부대 건축물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제</li> <li>◦ 건축선후퇴로 생기는 전면부의 공개공지는 보도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</li> </ul>	

### ■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

도면 번호	위치	계획 내용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단독주택지 및 시설녹지와 접한 부분의 담장높이는 1.0m이하로 권장한다</li> <li>◦ 전면공지와 접하는 부분, 근생용지, 공공성 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</li> </ul>	

## ■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공통	기본원칙	기본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천 소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.</li> <li>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간판의 설치위치, 설치량, 표현방법과 가로형간판, 돌출간판, 옥상간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,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, 경기도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(이하 “도조례” 또는 “시조례”라 한다)에 따른다.</li> </ul>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층~3층 입주업소 : 1층과 4층 창문사이의 벽면에 가로형간판 설치 가능</li> <li>4층 이상 입주업소 : 돌출간판 및 지주형 간판으로 설치</li> </ul>
	간판의 설치방법	간판의 설치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개 업소당 1개 이내에서 설치</li> </ul>
		간판의 설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간판의 소재는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·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</li> <li>간판의 바탕색은 3원색을 지향하고,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되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며, 명도 5이상, 채도 4이하에서 사용</li> <li>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(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) 사용 금지</li> </ul>
	가로형간판	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행 법규인 「옥외광고물관리법, 동법시행령, 경기도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」를 준수</li> </ul>
		가로형간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물 1층과 4층 창문사이의 벽면에는 판류형/입체형 부착 가능</li> <li>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 간판의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성명,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입체형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다.</li> <li>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의 표시 금지</li> <li>간판의 가로크기는 벽면폭의 80%이내, 동일층 통일,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폭의 50%이내</li> <li>간판의 세로크기는 창문간 벽면폭의 80% 이내로 하되, 최대 70cm이하, 동일층 통일,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%이내, 2m이내</li> <li>보행자 전용도로면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을 이용한 간판 권장</li> </ul>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 내용
공통	세로형간판	• 설치금지	
		• 5층 이하 건축물 :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6m이상 • 6층 이상 건축물 :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9m이상 단, 의료기관, 약국, 미용업소의 경우 건물2층 창문 하단 선 위로 표시 가능	
	돌출간판	• 건물 전면폭이 30m이하는 한줄로, 30m를 초과할 경우 한줄 추가 가능 • 같은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동일크기·동일폭으로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,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	
	옥상간판	• 설치금지	
	지주이용간판	• 연립형식 간판은 주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가능 • 간판의 가로폭은 외벽면으로 부터 2m이내 • 지주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이내	
	창문이용광고	• 건축물의 창문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. 다만 건축물의 출입문에는 그 면적의 20% 이내로 한다.	

## 5.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(변경)

- 해당 없음 -

부 천 소 사 (2) 지 구  
택 지 개 발 지 구 단 위 계획

### II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(1/2,500)
2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(1/2,500)
3. 가구 및 흙지계획 결정(변경)도(1/2,500)
4. 흙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
결정(변경)도 (1/2,500)